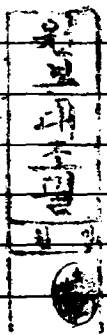


분류기호 문서번호	인위 01110 7-2	기안용지 (582 - 4106)		시행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.준영구. 10.5.3.1.	위 원 장		
수신처 보존기간	5년	1991. 4. 8		
시행일자	1991. 4.	결 1991. 4. 8		
보조 기관	교육원장	합	법무담당관 심사필	1991. 4. 8 문서통제 1991. 4. 8
	내무국장	조	인사과장 기획과장	
	교수부장	기	인사기획계장 정리계장	
기안책임자	이규섭	관	(91. 4. 권오봉)	발 송 인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	발 신 명 의	위 원 장	추산필 K/3
제 목	1991년도 서울특별시 별정직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			
(제1안)				
수 신 :	내부결재			
	1. 인사 01110 - 609 (91. 4. 3) 호와 관련입니다.			
	2. 1991년도 서울특별시 별정직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별첨과같이			
	시행하고 공고 "안" 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			
	별첨과같이 시행하고 공고 "안" 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			
	가. 시험실시 계획 : 별첨계획(안)참조			
	나. 공 고 내 용 : 별첨공고(안)참조			
	다. 공 고 방 법			
	공고일자 : 1991. 4. 9 (화)			
	게재신문 : 1 개 일간지			
	게재규모 : 5 단 23cm			

소요예산 : 3,339,600 원
(26,400 × 5단 × 23cm x1.1)
예산과목 : 교육, 공무원교육원, 시험관리, 수용비및수수료
지출방법 : 신문광고후 청구에의거 직불
첨 부 : 1) 시험실시계획(안) 1 부
2) 공 고 (안) 1 부 끝.
(제2안)
수 신 : 서울특별시
참 조 : 인사과장
제 목 : 갑 음
1. 인사 01110 - 609 (91. 4. 3) 호와 관련입니다.
2. 1991년도 서울특별시 별정직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별첨과같이
별첨과같이 시행하니 홍보및 시험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 부 : 공고문 사본 1 부, 끝
(제3안)
수 신 : 서울특별시
참 조 : 공보관
제 목 : 신문광고및 시보계재 의뢰
1. 1991년도 서울특별시 별정직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코자
공고문을 송부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문광고
1) 게재신문 : 1 개 일간지
2) 광고일자 : 91. 4. 9 (화)
3) 게재규모 : 5 단 23cm
나. 시보계재 : 최단기간내 게재



첨 부 : 1) 공 고 안 4 부
2) 보도자료 35 부
(제4안)
수 신 : 서울시 성북구 월곡동 39 - 1 한국과학기술 연구원장
참 조 : 시스템공학센터소장
제 목 : 91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필기시험 채점외피
1.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필기시험 답안지에 대한 전산 채점을 의뢰합니다.
가. 수 량 : 응시원서 접수후 통보
나. 처리요구 자료
(1) 응시번호순 채점표
(2) 성적순위 별 채점표
(3) 응시번호순 합격자 명단
(4)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용 명단
(5) 최종합격자 명단 (응시번호순, 성적순)
(6) 통 계 표
다. 선발예정 인원 및 가산 특전 : 공고문 사본 첨부
라. 시험시행요령, 합격자 결정 요령 : 별지 참조
첨부 : 1)공고문 사본 1 부, 2) 시험시행요령 1 부, 합격자 결정 요령 1 부
3) 통계표 양식 1 부 끝

결 제
1991. 4. 26

서울특별시
행정안전부
인사과
장


12-3


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의결서


1. 발의일시 : 1991. 4.
2. 안 건 : 서울특별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시험 계획 결정
3. 의결사항 : 서울특별시 별정직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
별첨 계획과 같이 시행키로 의결함
4. 기 타 : 회의록은 계획안으로 대응키로하고, 그 작성을 생략함


1991. 4.


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


위원장 백상승 


위원 김재량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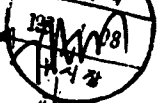
위원 강덕기 


위원 신성호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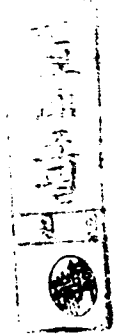
위원 김성순 

위원 박형 

위원 김학재 

위원 김창 

간사 이규철 



12-4

사회 복지 전문요원 (별정직 7급) 채용시험 시행 계획

1. 선발예정 인원 및 응시 자격

직 업	직 급	선발예정인원	응시 연령	거 주 지	응시자격	기 타
별 정 직 (사회복지전문요원)	7급상당	230명	91. 5.24 기준 만22세--만40세	제한없음	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	. 지방공무원법제31 조 외결과사유가 없고 .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 조의 규정에의하여 응 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자 . 현역군인 (방위소집감동 포함)인 경우 최종시험일 (면접기준일)기준으로 6개월이내에전역될자

2. 모 집 방 법

- 지방 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^{2019. 9. 09} 재한경쟁 특별채용 시험으로함

3. 시 험 과 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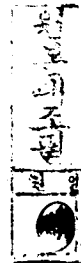
- 필 수 (3 과 목) : 국사 , 국민윤리 , 사회복지론 (사회복지정책론 포함)

4. 시 험 방 법

1 차 시 험	2 차 시 험
선답형 필기시험	면 접 시 험

- 진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자는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수 없음
- 필기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자는 면접 시험에 응시할수 없음
- 신체검사 실시명원 , 서류 제출 기간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

12-5



5. 응시 원서 접수 및 시험 시행 일정

구 분	기 간	장 소	합 격 자 발 표
응시원서 교부 및 접 수	91. 4. 17(수) - 91. 4. 19(금)	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(서초구서초동산36번지)	_____
필 기 시 험	91. 5. 4 (토)	91.4.16(금) 1개입간지및 공무원교육원계시	91. 5. 14(화) 1개입간지및공무원교육원계시
면 접 시 험	91. 5. 24(금)	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(서초구서초동산36번지_)	91. 5. 31 (금) 1개입간지 및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계시

6. 응시 원서 접수시 지참 및구비서류

- 응시원서 (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)----- 1 부
-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-----1 부
- 응시자격 증명 서류 (해당 자격증 사본)-----1 부
- 사 진 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탑보 상반신 반명함판)-----3매
- 인 장
- 응시 수수료(1,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)

* 우편에 의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

7. 시험 시행 요령

가. 필 기 시 험

. 시험과목 :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2조제1항"필포"에
의한 일반 행정 직류에 준하되 3과목으로 축소, 변경 조정 시행

1991. 4. 08
부서장

서울특별시
공무원교육원
부장

- . 문제수 : 과목당 20문
- . 시험시간 : 1문당 1분 기준
- . 문제형 : 객관식 선택형 : (5문중 택일식)
- . 배점 : 예문당 5 점 , 과목당 100점 만점
- . 출제 수준 :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함
- . 채 점 : KIST 에 채점 용역(O.M.R 채점)

나 . 면 검 시 험

- . 서울 특별시 인사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함

B . 합격자 결정

가 . 필 기 시 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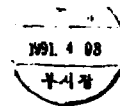
- . 매과목 4환 이상, 전과목 총점의 6환이상 득점한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130%범위 이내인 240명을 전과목 총득점 (가산득점포함)에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,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함

나 . 면 검 시 험

- . 두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 (10점) 이상인자를 합격자로 함
- 단, 두위원이 평점 요소중에서 동일한 평점 요소에 "하"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

다 . 최종 합격자

- . 면접 시험에 합격한자를 최종 합격자로 하되 제한사유 해당자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필기시험과 면접 시험 합격에 불구하고 이시험에서 불합격으로 함



12-9

9.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권

가. 국가 유공자 : "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" 제29조의 취입으로 대상자는 필기시험
 각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%를 각각 가산함 (취입으로대상자 등록여부는
 응시자 본인이 국가 보존처에서 사진에 확인 하여야함)

나. 제대 군인 : "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"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, 제대군인중2년
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편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
 5%를 , 2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편자 (방위소집이 해제된자등)에게
 는 만점의 3%를 각각 가산함 (단, 복태보증액, 복수전문요원 등은 제외)

다. 자격증 소지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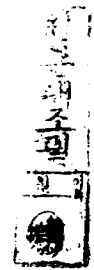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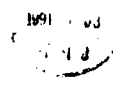
1) 주 산 . 타 자 자격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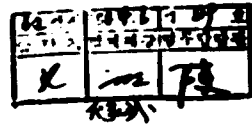
" 국가 기술 자격법" 에 의한 주 산 . 타 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각과목별 득점에
 만점의 1.5%까지 다음표에 의한 점수를 가산함
 (이경우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것 하나만을 가산함)

구 분	가산비율(%)	1. 5	1. 0	0. 5	인정하는 자격증
주 산		1 급 이상	2 - 3 급	4 - 5 급	대한상공회의소에서발행한 자격증 (다만,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기발행한 자격증도인정되나, 조외 의 기관및 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 한자는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자격 증을 갱신또는 재교부 받아 제출하여 야함
타 자		1 급	2급	3 - 4급	

* 위 "가" 항과 "나"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것 하나만을 "가"또는 "나"항과"다"항이
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가지 가산점을 합산하며 "다"항의 경우에는 과목별 4항이상 득점한 자에게만
 적용한다

12-8





공 고 (안)

서울특별시 공고 제 95호

19991년도 서울특별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

1991년도 별정직 지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1999년 4월 8일

서울특별시 장

1. 선발 예정인원 및 응시자격

구분	직렬	직급	선발예정인원	응시연령	거주지	응시자격	기 타
별정직	사회복지전문요원	7급 상당	230명	91년5월 ²⁴ 일 기준 만22세-만40세	제한없음	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소지자	·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·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자 · 현역군인(방위소집자 등포함)인경우 최종시 험일(면접기준일)기준 으로6개월이내에전역 필자

2. 시험방법

구분 \ 시험단계	제 1 차 시험	제 2 차 시험
별정직	선택형 필기시험	면접시험

- 진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수 없음
- 1차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며 이에 불합격판정을 받은자는 면접 시험에 응시할수 없음
- 신체검사 실시병원, 서류 제출기간등은 1차시험(합격자 발표시 공고함)



3. 필기시험 과목 : ^{3과목}필수(3) - 국사, 국문윤리, 사회특이론 (사회보장정책론포함)

4.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시행 일정

직종	구분	기간	장소	합격자 발표
별정직	응시원서교부및 접수	91년4월17일(수)- 91년4월19일(금)	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(서초구서초동산36번지)	—————
	필기시험	91년 5월4일 (토)	91년4월26일(금) 1개일간지및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	91년 5월 14일 (화) 1개일간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
	면접시험	91년 5월24일(금)	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(서초구서초동산36번지)	91년5월31일(금) 1개일간지및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게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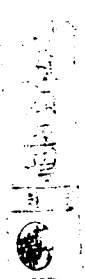
*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교봉편 - 지하집 : 3호선남부터미널역하차

- 버스 : 288(직석)번,88-1번,136번, 좌석42번 공무원교육원앞하차

5. 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구비 서류

- 응시원서 (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용지) -----1봉
-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 (병적사항 기재분) -----1봉
- 응시자격 증명서류 (해당 자격증 사본) -----1부
- 사진 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) -----3매
- 인 장
- 응시 수수료 (1,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 수입 증지)

* 우편에 의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



12- //

6. 필기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권

가. 국가유공자 : "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" 제 29조에 의한 위업보조 대상자는 필기시험
 각각목별 득점에 반점의 10%를 각각 가산 함 (위업보조대상자등록 여부는응시자
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진에 확인하여야함)

나. 제대군인 : "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" 제 70조 규정에 의하여 , 제대군인중 2년
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반점의 5%를
 각각 가산함 (단 , 부대보충역, 복수전문 요원등은 제외)

다. 자격증 소지자

1. 주 산, 타자 자격증

" 국가 기술 자격법 " 에 주산, 타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각각목별 득점에 반점의
 1.5% 까지 다음표에 의한 점수를 가산함
 (이경우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것 하나만을 가산함)

구 분 \ 가산비율(%)	1.5	1.0	0.5	인 정 하는 자 격 증
주 산	1급 이상	2 - 3 급	4 - 5 급	.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자격증 (다만,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개발한 자격증도 인정되나, 그외의외기관 및 단 에서 자격증을 취득한자는 대한상공회의 에서자격증을 갱신또는 재교부 받아 제 하여야함
타 자	1급이상	2급	3 -4급	

* 위 " 가"항과"나"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것 하나만을 " 가 " 또는 "나"항과, "다"항이
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가지 가산점을 합산하며 "다"항의 경우에는 과목별 4점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

7 응시자 유의사항

- 가. 응시의망자는 자격요건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랍니다
- 나.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주 민등록증 ,응시표, 필기도구(컴퓨터용흑성수성씨인펜) 를
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
- 다.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
- 라. 응시표를 분실한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컨닝실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
 응시할수 있습니다
- 마.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컨닝실 (582-4106)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

